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1016호 2016년 10월 14일(금)

공 고

- 속초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
- 속초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
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

속초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물품관리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10월 14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물품관리조례

2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에 따라 불용품 매각 시 감정평가는 법인만이 아닌 감정평가업자(감정평가법인, 감정평가사)로 변경하고 그 밖에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불용품 처분 시 감정평가법인만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로 변경
(안 제17조 제4항, 제5항)

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에서는 물품 검사 공무원을 시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으나, 조례에 물품출납원이 검수하도록 확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 조항 삭제 (안 제27조, 안 제28조)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. 11. 3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(참조: 회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－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(찬·반대 여부와 그 사유)
- － 제출자의 성명 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, 기타의견 등

나.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

- － 주 소 : 우)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
속초시청 회계과(계약관리팀)
- － 연락처 : 033-639-2174 (FAX 033-639-2396)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회계과(033-639-217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항 단서 중 “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(이하 “감정기관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감정기관에서”를 “감정평가업자가”로 한다.

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물품에 대한”으로 하고, “의한”을 “따라”로 하며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(불용품의 매각) ① ~ ③ (생략)	제17조(불용품의 매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	④ ----- -----

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항 각 호의에 따른 총중량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판매가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(이하 "감정기관"이라 한다)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.

⑥ ~ ⑧ (생략)

제27조(물품관리사무의 검사)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(과장이 있는 직속기관·사업소 포함)이, 기타 직속기관·사업소의 경우에는 그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직속기관·사업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

--. -----

-----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-----
-----.

⑤ ----- 감정평가업자가 -

-----.

⑥ ~ ⑧ (현행과 같음)
<삭 제>

있다.

제28조(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)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물품의 매입, 수리, 수선,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(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)이 행하고 회계공무원이 입회한다. 다만,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.

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.

제29조(물품검사서)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직속기

<삭 제>

제29조(물품검사서) ----- 물품
에 대한 -----

----- 따라 -----
----- 해당 -----

관·사업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
한다.

-----.

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10월 14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와 상한 금액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위원 가운데 호선 및 상위법에 따라 구성 위원 자격 중 일부내용 삭제 및 신설 (조례안 제2조)

나. 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(조례안 제4조)

다. 위원회 서면 심의규정 삭제 (조례안 제5조제4항)

라. 상위법과 미일치하는 위원 해촉규정, 상위법을 따르도록 규정 (조례안 제11조)

마.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추가 및 상한금액 삭제 (조례안 제12조)

바. 그 밖에 일부 조항, 현실에 맞게 정비 (조례안 제3조, 제5조, 제7조)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. 11. 3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(참조: 회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－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(찬·반대 여부와 그 사유)
- － 제출자의 성명 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, 기타의견 등

나.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

- － 주 소 : 우)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
속초시청 회계과(계약관리팀)
- － 연락처 : 033-639-2174 (FAX 033-639-2396)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회계과(033-639-217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”으로, “법 제16조제2항, 제4항 및 영 제59조,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, 제60조에 따른”으로, “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”을 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장은 속초시 경리관이 되며”를 “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”로, “자 중에서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 자로 하며,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“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대학”을 “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”로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자로서”를 “사람으로서”로, “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”를 “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 의한”을 “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공무원”을 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”으로, “있는 자”를 “풍부한 사람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지방회계법」 제46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

제3조제1항 중 “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”를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

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”로, “직무를 대행한다”를 “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경쟁입찰에 있어서”를 “입찰에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법 제31조의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가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

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”를 “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(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)을 따른다. 이 경우 “사건”을 “안건”으로, “부정당업자”를 “심의 관련자”로 본다.

제6조제1항 중 “심의 또는 자문을”을 “심의를”로 “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영 제107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, 제8항을 삭제하며,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간사) 위원회 및 소위원회 별로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계약업무관련 담당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계약담당자는”을 “시장은”으로, “심의 또는 자문을”을 “심의를”로, “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”을 “심의 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”을 “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”으로 하고, 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심의 또는 자문회의”를 “심의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”을 “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”을 “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”로 한다.

제9조 본문 중 “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”를 “심의를 위하여”로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1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, 도로,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

10. 공원 공사

제13조제1항 본문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며, “수당·여비 및 심사수당”을 “수당·여비”로 하며, 제1항 단서 중 “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, 관계공무원이”를 “관계공무원이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9조에 따라”로,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위원회는 2016년 12월 31까지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 하여야 한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.

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장은 제2조제2항제7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며,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, 제4항 및 영 제59조,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계약심의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속초시 경리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속초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위촉한 자로 하며,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지사가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1.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대학에	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----- ----- 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, 제60조에 따른 ----- --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--- -----. 제2조(계약심의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----- 사람 중에서 속초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

서 관련분야의 교수(부교수·조교수를 포함한다)로 재직 중에 있는 자

2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

3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가 추천하는 자

4. 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

5.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

6.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·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

<신 설>

제3조(임무 및 임기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있을 때

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
----- 사람

2. ----- 사람으로서
-----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
사람

3 .

----- 사람

4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

<삭 제>

6. ----- 공
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
----- 풍부
한 사람.

7. 「지방회계법」 제46조에 따른 재
무관 또는 분임재무관

제3조(임무 및 임기) ① -----

---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

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(생략)

제4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

2. 3. (생략)

4.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

<신설>

5. (생략)

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, 낙찰자 결정 방법등에 관한 사항

2.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

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-----

-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(기능) ① -----
-----.

1. 입찰에서

2. 3. (현행과 같음)

4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에 따른 --

5.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가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

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<삭제>

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회의소집 및 심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
② (생략)

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제6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~ ⑥ (생략)

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소집 및 심의) ① -----
-----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(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)을 따른다. 이 경우 “사건”을 “안건”으로 “부정당업자”를 “심의 관련자”로 본다.

<삭 제>

제6조(소위원회) ① -----
----- 심의를 -----

----- 영 제107조에 따라 -----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, 당해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<신 설>

제7조(심의요청 등)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8조(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)

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

<삭 제>

제6조의2(간사) 위원회 및 소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계약업무 관련 담당으로 한다.

제7조(심의요청 등) 시장은 ----- 심의를 -----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-----.

제8조(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)

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-----.

② ----- 제1항에 따라 ----- 심의회 -----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 -----.

③ -----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

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
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 위원회(소위원회를 포함한다)의
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
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,
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
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관계기관
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
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
수 있다.

제10조(심의사항의 사후관리) ① 제8
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
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
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
하여야 한다.

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
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
계약 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
시 이를 참고한다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
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
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
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
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어려

를 -----
-----.

제9조 -----
----- 심의
위하여 -----

-----.

<삭 제>

제11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영
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
나 해촉할 수 있다.

운 때

2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
3.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
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
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
고 판단될 때

4.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
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12조(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
한금액)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
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공사로
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공사로 한다. 이 경우 그 상한
금액은 추정가격 1억원으로 한다.

1. ~ 8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9. (생 략)

제13조(수당 및 여비 등) ① 위원회
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
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
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
· 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
수 있다. 다만, 계약심의위원회 관

제12조(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
금액) -----

----- . <삭 제>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, 도로,
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
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

10. 공원 공사

11. (현행 제9호와 같음)

제13조(수당 및 여비 등) ① -----

----- 범위에서
----- 수당
· 여비 -----
----- . ----- 관계공무원이 -----

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, 관계공
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
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
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
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
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
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
있다.

-----.

② 제9조에 따라 -----

----- 범위에서

-----.